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4
----------	-----

제 출 일 : 2024. 1. 16.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하여 대형 건축물 등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관심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관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경관법 시행령」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및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3. 주요내용

- 「경관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안 제8조제1항)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정비 및 추가(안 제26조제1항, 제2항)
 - 현행 경관심의 대상 공공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부합하도록 정비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및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의 건축물 심의 대상 추가
-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경관심의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항)
- 경관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인원 및 업무를 규정(안 제31조제2항제6호)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부서협의
 - 협의기간: 2023. 9. 20. ~ 2023. 11. 23.
 - 협의결과
 - 1)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3) 규제심사: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원안 가결
-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2023. 11. 30. ~ 2023. 12. 20.
 -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
- 관계법령: 붙임 참조
- 상급기관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영 제5 조제2항”을“영 제5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대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대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0분의 10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관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관위원회 행정사무의 처리와 회의를 운영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경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시행령」 제 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관 부서		기반조성과
입안자	담당과장 직위·성명	기반조성과장 송 승 훈
	담당팀장 직위·성명	공공디자인팀장 이 용 민
	담당자 성명·전화	정 승 환 (590-235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8조(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 ----- 영 제5조제1호라 목-----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대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p> <p>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p>
<p><신 설></p>	

<신 설>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대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 옥외철타이 있는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0분의 10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 5. (생략)

6.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2. ~ 5. (현행과 같음)

6. 경관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관위원회 행정사무의 처리와 회의를 운영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경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붙임 입법예고 결과보고

등록번호	건축과-37085	주무관	경관디자인팀장	건축과장	도시국장
등록일자	2023. 12. 21.				전결 2023. 12. 21.
결재일자	2023. 12. 21.	정승환	정광현	주영상	김상수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 조		법무담당관	김진배		
		법무행정팀장	조성관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요약사항】

- 공고번호 : 공고 제2023-1544호
- 입법예고기간 : '23. 11. 30. ~ 12. 20.(20일간)
-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게시판, 홈페이지
-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



도 시 국
(건축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 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도시국 건축과장 주영상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건축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3A경기남양081)

- 1. 건축과-27428(2023. 9. 20.)호와 관련입니다.
 -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3A경기남양081) 1부. 끝.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김윤영	여성아동과장	이진순	복지국장	전결 2023. 9. 26. 최재용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27048	(2023. 9. 26.)		접수	건축과-28055	(2023. 9. 26.)	
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다산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남양081		
정책명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명	정승환	전화번호 031-590-235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축과)	<p>○ 제·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하여 대형건축물 등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관심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경관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안 제8조제1항)-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정비 및 추가(안 제26조제1항, 제2항)-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경관심의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항)- 경관위원회 간사, 서기 인원 및 업무 규정(안 제31조제2항제6호)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p>■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p>		
	<p>'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p>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건축과장 귀하			

붙임 부패영향평가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건축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3-73)

건축과-27426(2023.9.20.)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경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서 *서광근*

주무관 **김주현** 청렴윤리팀장 **신경주** 감사관 **서상근** 2023. 9. 26.

협조자

시행 감사관-11028 (2023. 9. 26.) 접수 건축과-27961 (2023. 9. 26.)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붙임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알림 및 자치법규 개선 요청

1. 법무담당관-13984(2023. 11. 6.)호와 관련됩니다.
2. 2023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2023. 11. 20. 개최)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개정 15) 대상 자치법규 소관 부서에서는 **개선권고 내용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시고, 그 결과를 **붙임 2 서식**에 따라 **2023. 2. 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개선조치 관리 카드) ①상단 '담당부서 조치 결과' 및 '최종 조치일', ②안건 하단 '조치결과 내용'란 작성

의안 번호	안 건 명	심의 결과
2023-13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2023-14~29	[규제입증책임제 개선권고안 심의 - 16건]	-
2023-14	남양주시 창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원안 가결
2023-15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	원안 가결
2023-16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원안 가결
2023-17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부 결
2023-18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원안 가결
2023-19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원안 가결
2023-20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원안 가결
2023-2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	원안 가결
2023-22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원안 가결
2023-23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원안 가결
2023-24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원안 가결
2023-25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14조	원안 가결
2023-26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5조의2	원안 가결
2023-27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	원안 가결
2023-28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8조	원안 가결
2023-29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원안 가결

※ 도시정책과 5건, 건축과 3건, 도시재생과 2건, 노인복지과·문화예술과·체육과·수도과·공원관리과 각 1건

붙임 규제심사 결과

관련 규정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사) ①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5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11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재심사의 요청) 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붙임 1. 2023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부.
2. 2023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및 개선조치 관리 카드 1부.
3.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세부처리절차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수신자 노인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수도과장), 남양주시 도시관리사업소장(공원관리과장)

주무관	조한기	적극행정팀장	남상영	법무담당관	전결 2023. 11. 22.
협조자				김근애	
시행	법무담당관-14723	(2023. 11. 22.)	접수	건축과-33795	(2023. 11. 23.)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붙임 관계법령 발췌

☑ 「경관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경관법 시행령」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전문개정 2022.11.1.]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2015. 12. 28., 2016. 7. 6., 2017. 2. 28.,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남양주시 경관 조례」

[별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6조 관련)

구분	분류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p>공공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신축)</p>	<p>공공청사</p>	<p>지방자치단체 청사, 공공교육·연수시설,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전화국 등</p>
	<p>문화·복지</p>	<p>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의료시설, 기념관, 박물관, 시민회관, 복지시설, 미술관, 휴게소 등</p>
	<p>교통</p>	<p>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사, 지하철역 등</p>
	<p>환경</p>	<p>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등</p>
	<p>기타</p>	<p>그 밖에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p>